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어린이수영장을 어린이놀이시설에 포함 및 안전요원
배치의무 확대 등〉

■ 허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402호)

2025. 7.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문위원 나아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허영의원 등 13인
2. 제안연월일 : 2025. 3. 27.
3. 회부연월일 : 2025. 3. 2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놀이기구를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
기구 등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로 정의하
고, 그 관리주체에게 유지관리의무, 안전점검 실시 및 안전관리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2023년에 어린이용 수영장을 갖추고 무인으로 운영되는 이
른바 키즈풀에서 어린이 익사사고가 발생하였으나, 키즈풀은 어린이놀
이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임.

이에 어린이놀이기구의 범위에 키즈풀을 추가하여 키즈풀에 대해서
도 안전관리 규정을 적용하려는 것으로, 어린이놀이기구의 범위에 ‘어
린이수영장’이 설치된 시설도 추가하고, 어린이수영장이 설치된 어린
이놀이기구에는 물놀이 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어린이수영장의 정의를 신설하고, 어린이수영장이 설치된 시설을 어린이놀이기구의 정의에 포함하며, 어린이수영장 설치 시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어린이수영장이 설치된 어린이놀이기구에 물놀이 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11조 및 제15조의2).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 -----. 1. (현행과 같음) <u>1의2. “어린이수영장”이란 어린이가 물놀이에 이용할 수 있는 수영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u> <u>가. 「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설치한 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u> <u>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 중 수영장</u>

현행	개정안
2. “어린이놀이기구”이라 함은 <u>어린이놀이기구</u>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u>놀이터</u>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 9. (생략) 제11조(어린이놀이기구의 설치) 어린이놀이기구를 설치하는 자(이하 “설치자”라 한다)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u>어린이놀이기구</u>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15조의2(물놀이형 어린이놀이기구의 안전관리) 관리주체는 어린이 안전을 위하여 물을 활용한 물놀이형 <u>어린이놀이기구</u>에 물을 활용하는 기간 동안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안전요원의 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2. -----<u>어린이놀이기구</u> 또는 <u>어린이수영장이</u>-----<u>시설</u>로서-----. 3. ~ 9. (현행과 같음) 제11조(어린이놀이기구의 설치) ----- ----- ----- -----<u>어린이놀이기구</u>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u>안전기준을 충족하는 어린이수영장</u>을-----. 제15조의2(물놀이형 어린이놀이기구의 안전관리) ----- -----<u>어린이놀이기구</u> 또는 <u>어린이수영장이</u> 설치된 <u>어린이놀이시설</u>----- -----.

현행법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인¹⁾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를 어린이

1)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이란 구조·재질 및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재산상 피해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어린이제품 중에서 안전인증

놀이시설로 정의하고²⁾,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안전인증³⁾을 받은 어린이놀이기구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⁴⁾하도록 하며,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서 물을 활용하는 기간에는 관리주체가 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규정⁵⁾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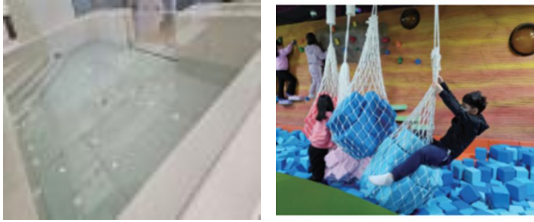
그런데 최근 무인키즈카페나 무인키즈풀⁶⁾과 같이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등 현행법령에 따른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새로운 어린이놀이시설이 확대되고 있는데, 이러한 신종 놀이시설은 현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의 규율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을 통하여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어린이제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라 함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관리주체”라 함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 3)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안전인증 등) ①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제조업자(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또는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1. 어린이제품 모델(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고유한 명칭을 부여한 제품의 형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받는 경우에는 제품검사와 공장심사를 모두 거칠 것
 2. 일정 수량만 제조·수입하거나 1회성으로 생산하는 어린이제품에 대하여만 안전인증을 받는 경우에는 제품검사만을 거칠 것
- 4)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자(이하 “설치자”라 한다)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어린이놀이기구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5)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의2(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관리주체는 어린이 안전을 위하여 물을 활용한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 물을 활용하는 기간 동안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안전요원의 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6) 일반적으로 상주 관리인력이 없는 소규모의 키즈카페 또는 키즈풀을 의미하며, 무인키즈카페 시설과 무인키즈풀 시설이 함께 있는 경우 무인키즈풀로 분류하고 있음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실제로 지난 2023년 7월 무인키즈풀에서 28개월 유아가 튜브가 뒤집히며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음.

<현행 어린이놀이시설과 신종·유사 어린이놀이시설 비교>

구분	현행 어린이놀이시설(법적용 ○)	신종·유사 어린이놀이시설(법적용 ×)
예시		
특징	미끄럼틀, 시소 등 어린이제품, 공산품 표준화, 정형화	욕조(물놀이용), 직물형태의 놀이기구 인테리어, 현장에서 설치·시공 비정형적(다양한 형태로 변형)

* 자료: 행정안전부

2025년 3월 기준 전국에 무인키즈카페는 총 518개소, 무인키즈풀은 총 381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특히 무인키즈풀의 경우 공간대여업 형태로 어린이놀이기구를 설치하지 않고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약 88.7%가 현행법상 어린이놀이시설에 해당하지 않고, 시설의 신고·등록 의무도 부여되어 있지 않음.

<무인키즈카페 및 무인키즈풀 시설 현황>

구분	총계	현행법 적용 ○	현행법 적용 × (신종)
무인키즈카페	518개소	495개소(95.6%)	23개소(4.4%)
무인키즈풀	381개소	43개소(11.3%)	338개소(88.7%)

* 자료: 행정안전부

이에 개정안은 무인키즈풀과 같이 어린이가 물놀이에 이용할 수 있는 수영장을 “어린이수영장”으로 정의하고, 어린이수영장이 설치된 시설도 현행법상 어린이놀이기구시설에 포함하며, 어린이수영장에도 현행 「어린이놀이기구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행정안전부고시)을 적용하도록 하고, 어린이수영장이 설치된 어린이놀이기구시설에도 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무인키즈풀과 같이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지만 어린이의 수중활동이 가능한 어린이수영장은 어린이 익사사고의 위험성 측면에서 현행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물놀이형 어린이놀이기구시설과 유사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입법방식, 현행 규정의 내용 및 무인키즈풀의 특성과 이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첫째, 개정안은 현행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대표적인 시설인 어린이수영장을 어린이놀이기구시설에 포함함으로써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는데, 향후 어린이 놀이문화의 변화에 따라 어린이수영장 외에도 어린이 놀이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새로운 형태의 어린이놀이기구시설이 생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어린이수영장을 포함한 신종 어린이놀이기구시설이 모두 법률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

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행정안전부는 현행법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새로운 유형의 놀이터도 어린이놀이기구시설에 포함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어린이수영장과 같은 놀이터의 세부형태는 하위법령에 규정하고 법률에는 어린이놀이기구가 없는 놀이공간을 포괄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입장임.

둘째, 개정안은 어린이수영장에 대해서도 행정안전부 고시인 「어린이놀이기구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현행 「어린이놀이기구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미끄럼틀, 그네, 회전놀이기구 등 정형적인 어린이놀이기구에만 적용할 수 있는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어린이수영장에 적용하기에는 다소 적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어린이수영장에 맞는 새로운 기준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개정안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현행 「어린이놀이기구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을 성격이 다른 어린이수영장에 적용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신중·유사 어린이놀이기구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적 위험요소 및 관리적 위험요소를 함께 관리할 수 있는 포괄적인 안전관리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이에 행정안전부는 신중·유사 어린이놀이기구시설에 대한 ‘안전성평가’ 제도를 도입하였고, 2025년 1월 ‘안전성평가’ 제도의 방법·절차·평가항목

등에 대한 설명을 담고있는 「신종·유사 어린이놀이기구에 대한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각 지방자치단체 등 안전관리 주체에 배포하고 제도의 시행을 권고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셋째, 지난 2023년에 발생한 사고와 같은 무인키즈풀은 대부분 영유아 자녀가 있는 가족이 타인에 대한 사생활 침해 없이 단독으로 사용하기 위해 운영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해당 시설에 안전요원 배치를 의무화할 경우 사업자의 서비스 제공목적 및 사용자의 이용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성이 있음.

행정안전부는 무인키즈풀에 대한 안전요원 배치는 이용자의 사생활 침해, 소규모 업장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나타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적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임.

넷째, 개정안은 법 시행을 위한 유예기간으로 6개월을 두고, 어린이수영장이 설치된 어린이놀이기구의 설치·신고 및 설치검사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① 하위법령 마련, 신규 제도에 대한 안내·제도 등을 위해 보다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규정할 필요가 있고, ② 현행법상 어린이 놀이기구 설치검사는 표준화된 시설기준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관련 시설기준이 없는 어린이수영장에 적용하기는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설치검사와 관련한 경과조치 규정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49